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69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 : 태영호・김기현・조경태

정희용 · 이주환 · 송언석

김용판 · 이명수 · 김정재

이태규 · 김예지 · 조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건 수 증가추세가 지속적이고, 2018년 기준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76.9%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보임. 특히 9살 남아 가방 사망 사건, 9살 여아 탈출사건 등 지속적이고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현행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형량 하한을 상향하고, 정 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 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학대 등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61조의2 신설 및 제63조제1항제1호 삭제).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다.

제5조 중 "3년 이상의"를 "5년 이상의"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소환불응죄)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	제4조(아동학대치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	
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u>무기</u>	<u>사형 또</u>
<u>또는 5년 이상의 징역</u> 에 처한	<u>는 무기징역</u>
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때에는 <u>3년 이상</u>	<u>5년 이상</u>
<u>의</u> 징역에 처한다.	<u>의</u>
<u><신 설></u>	제61조의2(소환불응죄) 정당한 사
	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
	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3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 <삭 제> 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 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 <u>람</u>

2. ~ 6. (생 략)

②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